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18. 02.

주식회사 선명종합건설

1.1. 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목적

- 사업지구 주변으로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인접해 있어 향후 개발완료시 지역여건 향상이 기대되는 지역임
- 따라서, 현재 농경지인 대상지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대상지를 정비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효과를 얻도록 함
-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대상지의 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주변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뿐 아니라 공공시설의 제공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 효과를 얻음으로써 지역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도록 함

나. 계획의 내용

1) 계획명

-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

2) 계획의 종류

- 「주택법」에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은 의제사항임

3) 계획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그림 1] 참조)
- 계획면적 : 26,100㎡

4) 계획시행자 : 주식회사 선명종합건설

5) 승인기관 : 사천시

6) 계획기간 : 2017~2021

1.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 본 개발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직접적인 영향 및 간접적인 영향, 장기적 영향 및 단기적 영향)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서에 반영함으로써 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주관행정기관

- 사천시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행정기관

- 사천시,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1.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가. 공람 개요

- 1) 주관행정기관 : 사천시(건축과)
- 2) 공람공고 : 2017년 12월 20일[사천시 공고 제2017-1321호]
 - 정보통신망공고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신문공고
 - 중앙일간지 : 한겨레
 - 지방일간지 : 경남도민일보
- 3) 공람기간 : 2017년 12월 22일 ~ 2018년 1월 17일(20일간, 공휴일 제외)
-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람 장소
 - 사천시 건축과
 - 정동면사무소

- 의견제출 장소
 - 사천시청 건축과, 정동면사무소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의견제출 기간 : 2017년 12월 22일 ~ 2018년 1월 25일
 - 사천시청 건축과, 정동면사무소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의견제출 기간 : 2017년 12월 22일 ~ 2018년 01월 25일

공람공고

사천시 공고 제2017 - 1321호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의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2일

사 천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가. 명 칭 :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 나.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
- 다. 면 적 : 26,100㎡
- 라. 계획시행자 : 주식회사 선영종합건설
- 마. 계획승인기관 : 사천시

2. 공람(열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17. 12. 22 ~ 2018. 1. 17 (20일간, 공휴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 정동면사무소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2018. 1. 4(목요일), 14:00
- 나. 장 소 : 사천시 정동면사무소

3.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2017.12.22~2018.01.25)
- 나. 제출방법 : 경상남도 사천시(건축과)로 서면제출(FAX : 055-831-6034, E-mail : hellmut@korea.kr)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의견 등록

-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 055-831-32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HOME](#) | [SITEMAP](#) | [LANGUAGE](#)

사천시 소개

뉴스/미디어

민원/공개

기업/경제

복지/생활

농수산/제철

항공우주

문화관광

뉴스/미디어 > 시정소식 > 공고/고시/시험

가

뉴스/미디어

시정소식

- 공지사항
- 공고/고시/시험
- 사천시 공보
- 행사/축제/공연
- 유관기관 소식

시정정보 >

포토갤러리 >

영상갤러리 >

디지털미디어도서관 >

공고/고시/시험

사천시 공고2017-1321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번호: 2000029 | 2017-12-20 11:25 | 건축과 | 조회수: 59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통정지구).hwp [다운로드하기](#)

사천 통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_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pdf [다운로드하기](#)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통정리 536번지 일원의 '사천 통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

TOP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http://www.sacheon.go.kr/info/01613/03180web>

공고/고시/시험

제목

총 7928건의 글이 있습니다.

사천시 건축위원회(9회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PDF\]](#)

붙임과 같이 사천시 건축위원회(9회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 합니다

2017-12-20 | 건축과 | 조회수: 6

사천시 공고 제2017-132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PDF\]](#)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사양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20 | 건설수도과 | 조회수: 9

사천시 여성회관 2018년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모집 공고 [\[PDF\]](#)

○ 모집과목/인원: 17과목 17명 (붙임참조) ○ 운영기간: 2018. 3월 - 12월(상, 하반기 운영) ○ 공고기간: 2017.12.22 - 2018. 1. 4. ○ 원서접수: 2018. 1. 2(화) - 1. 4(목) 09시-18시 ※ 접수처: 사회 복지과(여성가족담당)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면접일시: 2018. 1. 10(수) 1400 사천시청 중회의실(2층) ○ 최종합격자 발표: 2018. 1. 12(금) / 개.

2017-12-20 | 사회복지과 | 조회수: 29

사천시 공고2017-1321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PDF\]](#)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통정리 536번지 일원의 '사천 통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2-20 | 건축과 | 조회수: 40

사천시 공고 제2017-1320호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모집 공고 [\[PDF\]](#)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12. 20 - 2017. 12. 26(서류접수: 2017. 12. 20 - 2017. 12. 26) 2. 모집인원: 2명 3. 근무기간: 2018. 1. - 2018. 12. 31 4. 근무장소: 사천시청 사회복지과 5.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6. 근무내용: 노인일자리 추진관련 업무(참여자관리, 시스템 등록 등) 7. 보수: 월 1,574,000원(4대보험 ...)

2017-12-20 | 사회복지과 | 조회수: 87

TOP

5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EIASS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조회 협의통계 국민참여 건강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안내 평가정보 작성기이드오인 관련사이트 평가기관지침

로그인 사이트맵 도움말

국민참여

National participation

- 협의진행현황 +
-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
- 평가서 초안 공람 -**
- 사용자지원 +
- .Q&A
- .FAQ
- .공지사항

평가서 초안 공람

지역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업명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검색결과 : 3,952건

| 번호 | 협의기관 | 사업명 | 초안공람기간 |
|------|----------|---------------------------------|-------------------------|
| 3933 | 한강유역환경청 | 웅인 상갈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2017.12.29 ~ 2018.01.25 |
| 3932 | 한강유역환경청 |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 2017.12.29 ~ 2018.01.11 |
| 3931 | 금강유역환경청 | 공주시 계룡 무궁화 신구마을조성사업 | 2017.12.29 ~ 2018.01.26 |
| 3930 | 새만금지방환경청 | 부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 | 2017.12.29 ~ 2018.01.12 |
| 3929 | 한강유역환경청 | 화성시 도시관리계획(홍도지역 및 홍도구역) 수립 및... | 2017.12.29 ~ 2018.01.10 |
| 3928 | 환경부 | 가회청포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2017.12.27 ~ 2018.01.19 |
| 3927 | 환경부 |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 2017.12.27 ~ 2018.01.19 |
| 3926 | 낙동강유역환경청 |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2017.12.22 ~ 2018.01.17 |
| 3925 | 금강유역환경청 | 아산 복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 | 2017.12.22 ~ 2018.01.17 |
| 3924 | 한강유역환경청 | 인천 도시관리계획(홍도지역·석정초교 등) 결정(변경... | 2017.12.21 ~ 2018.01.08 |

◀ ◁ 1 2 3 4 5 6 7 8 ▷ ▶

개인정보처리방침 지적권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용약관

주관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
 운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5층-11호
 운영지원팀 : 1600-2156 / 팩스 : 02-5485-2156 / E-Mail: eiass@keire.kr



| 초안공람 | 주민의견수렴 | | |
|------------------|--|--------|-------------------------|
| ☐ 협의업무 담당 | | | |
| 협의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담당자 | 김미지 |
| 담당부서 | | E-mail | lmi0024a@korea.com |
| 전화번호 | 02-- | Fax번호 | 02-- |
| ☐ 초안공람 | | | |
| 초안 | 제1장 요약문.pdf 제2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pdf 제3장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pdf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pdf 제5장 지역개발.pdf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pdf 제7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 및 조치내용.pdf 제8장 평가항목의 중재결과.pdf 제9장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pdf 제10.1.1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pdf 제10.1.2 지질 및 생태축의 보전.pdf 제10.1.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df 제10.1.4 수환경의 보전.pdf 제10.2.1 환경기온 부합성.pdf 제10.2.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pdf 제10.2.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pdf 제10.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pdf 제11장 부록.pdf 초안표지-목록확인.pdf | | |
| 초안 공고일 | 2017.12.22 | 초안공람기간 | 2017.12.22 ~ 2018.01.17 |
| 공람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 정동면사무소 | | |
| 설명회장소 | 사천시 정동면사무소 | | |
| 설명회일시 | 2018.01.04 | 의견제출기간 | 2017.12.22 ~ 2018.01.25 |
| 부서명 | 사천시 건축과 | 전화번호 | 055-831-3216 |

한겨레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12면)

사천시 공고 제2017 - 1321호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의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2일

사 천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가. 명 칭 :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 나.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
- 다. 면 적 : 26,100㎡
- 라. 계획시행자 : 주식회사 선명종합건설
- 마. 계획승인기관 : 사천시

2. 공람(열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17. 12. 22 ~ 2018. 1. 17(20일간, 공휴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 정동면사무소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2018. 1. 4(목요일), 14 : 00
- 나. 장 소 : 사천시 정동면사무소

4.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2017. 12. 22~2018. 01. 25)
- 나. 제출방법 : 경상남도 사천시(건축과)로 서면제출(FAX : 055-831-6034,
E-mail : helmut@korea.kr)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ass.go.kr/)의견 등록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 055-831-32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일보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2면)

사천시 공고 제2017-1321호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의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2일

사 천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가. 명 칭 :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 나.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
- 다. 면 적 : 26,100㎡
- 라. 계획시행자 : 주식회사 선명종합건설
- 마. 계획승인기관 : 사천시

2. 공람(열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17. 12. 22 ~ 2018. 1. 17 (20일간, 공휴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 정동면사무소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2018. 1. 4(목요일), 14:00
- 나. 장 소 : 사천시 정동면사무소

4.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2017.12.22~2018.01.25)
- 나. 제출방법 : 경상남도 사천시(건축과)로 서면제출(FAX : 055-831-6034, E-mail : hellmut@korea.kr)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의견 등록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 055-831-32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설명회 개최 개요

-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 2017년 12월 22일(사천시 공고 제2017-1321호)
-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설명회 일시 | 설명회 장소 | 비고 |
|----------------------|----------------|----|
| 2018년 1월 4일(목) 오후 2시 | 사천시 정동면사무소(2층) | |

- 참석인원 : 총 13명(지역주민 6명, 사천시청 2명, 정동면사무소 1명, 용역사 5명)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 민 설 명 회

● 일 시 : 2018년 01월 04일(목), 14:00
 ● 장 소 : 정동면사무소
 ● 참석자 명단

| 성 명 | 주소 및 연락처 | 서 명 | 비 고 |
|-----|--------------|-------------------------|-----|
| 이영순 | 수리동 213-11 | [Handwritten Signature] | |
| 황인보 | 황동면 옥빛리 8 | [Handwritten Signature] | |
| 김재교 | 사천 정동면 이주리 9 | [Handwritten Signature] | |
| 김재홍 | " 77 | [Handwritten Signature] | |
| 신문진 | " 99-9 | [Handwritten Signatu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제출

가. 관계기관 의견

- 경상남도(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사천시(환경위생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나. 주민의견

- 주민의견서 제출 : 0명
- 공청회개최 요구 : 0명

1.5.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 사천시 풍정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경상남도, 사천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공람기간내 제출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주민설명회의 경우 1명의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 관계행정기관의 검토의견 및 주민의견을 정리하여 반영여부를 <1.5-1>에 나타내었으며, 반영된 의견은 요약정리 후 본문 페이지를 표기하였고 미반영된 의견은 미반영 사유를 명시하였다.

<표 1.5-1> 의견수렴 결과

| 구분 | 의견제출자 (기관) | 평가항목 | 의견요지 |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비고 |
|-----------------|---------------|------|---|--|----|
| 평가서 초안 공람 | 낙동강유역 환경청 |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으로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바, 아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별 검토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계획의 필요성 및 규모 적정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검토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의 필요성 및 규모 적정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역 주변에 마을 및 아파트 단지가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 마을 및 아파트 단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 |

<표 1.5-1> 계 속

| 구분 | 의견제출자 (기관) | 평가항목 | 의견요지 |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비고 |
|-----------------------------|---------------|--|--|---|----|
| 평가 서 초 안 공 람 | 낙동강유역 환경청 | 총괄 | -주변 환경 영향(보전상태가 양호한 식생대.지형 및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범위 결정 | -계획지구는 대부분 농경지 및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로서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한 지역은 제척하여 구역계를 설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지로 인한 경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식재계획을 수립하였음 | |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아래 검토의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제시한 우리청 의견을 충실히 검토.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여야 함.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검토의견을 충실히 검토·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
| | | | •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 수렴 후 변경사항(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도면, 표 등)하여 제시하여야 함.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달라진 사항은 없음 | |
| | | 2.입지의 타당성 | 가. 자연환경의 보전 • 현황조사 장전일반산업단지 외 2개 자료와 동 사업계획지역의 연관성(이격거리, 동·식물상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미제시되어 있으므로 도면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사토에 대한 처리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토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처리시 외부에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발생여부를 예측·평가하여야 함 -사토관리를 위해 계획지구내 임시적치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제시한 바, 구체적인 임시적치장 위치 및 규모, 가배수로 계획로 등 제시 -토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근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공급 가능성이 확인되었을 때 활용가능한 것이며, 가상적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 운영시 상수도 공급계획 및 오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계획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 생태계 현황조사시 인용한 문헌조사 자료에 대한 본 계획 지구와 연관성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음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사토 반출에 따른 환경영향을 검토하였음 -사토 임시적장 위치, 규모, 가배수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음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
| | | • 상수 공급계획 및 우수처리계획과 관련한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자료를 제시하였음 | | | |

<표 1.5-1> 계 속

| 구분 | 의견제출자 (기관) | 평가항목 | 의견요지 |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비고 |
|-----------------|---------------|--|--|---|----|
| 평가서 초안 공람 | 낙동강유역 환경청 | 2.입지의 타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우수 등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인근 하천 등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대책(투수성포장,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비점오염물질로 인해 인근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여과형 시설) 2개소 설치 -투수성(황토, 소형고압블럭) 포장계획을 수립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유출량 저감 등 도시공간의 자연순환기능 향상을 위하여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은 최대한 투수성 재료로 포장하고 그 밖의 인공화지역에 대하여도 견폐율 조정, 옥상녹화, 벽면녹화, 녹지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생태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동주택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견폐율 조정, 투수성 포장, 녹지조성 등을 통하여 생태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유도 ※"생태면적을 적용 지침(2016.7, 환경부)"을 참고하여 사업시행 후 생태면적률은 최소 4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권고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내 투수성포장, 조경 녹지 확보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면적률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으나 목표생태면적률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산정되었음 - 목표생태면적률 : 40.0% - 생태면적률 : 38.2% 따라서, 근린생활시설(2층), 경비실 등 건축물에는 옥상녹화를 최대한 유도하여 생태면적률을 제고시킬 계획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가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곡부의 물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동사이에 낙엽활엽 교목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경계 및 주동사이에 낙엽활엽교목 352주, 상록교목 478주, 상록 및 낙엽관목 11,850주 등의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경관훼손을 최소화하였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상동물상 영향 저감방안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집수정, 측구 등에 양서·파충류 등 소형동물의 추락 방지 및 탈출 시설 계획 -소형 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한쪽 방향으로 단계별 공사를 실시하기 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공사방향, 단계구분, 도면표기 등)을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으로 인해 육상동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계획지구내에는 측구 설치계획이 없으므로 집수정 내에 추락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집수정내 인공구조물(인조목, 돌무더기)을 설치할 계획임 -소형 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공사방향, 단계구분 등이 표기된 단계별 공사계획도를 제시하였음 | | |

<표 1.5-1> 계 속

| 구분 | 의견제출자 (기관) | 평가항목 | 의견요지 |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비고 |
|-----------------|---------------|--------------|---|--|----|
| 평가서 초안 공람 | 낙동강유역 환경청 | 2.입지의 타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가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지형과의 단차는 경사도 1:1 이내의 법면으로 처리되도록 조성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의 지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면부는 생태옹벽블럭, 패널식옹벽 등으로 계획하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지형훼손을 최소화하였으며, 단지내 토사사면은 1:1.5로 완경사로 계획하였음 | |
| | | | <p>나. 생활환경의 안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및 운영 시 자체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을 밀식 -운영시 태양광에너지 활용, 에너지 고효율 설비(센서 등, LED 조명 등) 설치, 절수(전자감응식 수도설비, 빗물저금통 등)·절전설비 설치, 건축물 옥상 녹화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및 운영 시 자체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였음 -지구내 식재계획된 조경수목 중 탄소저감효과가 높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임 -운영시 에너지 고효율 설비(고휘도방전램프, 안정기), 절수설비(세면기, 샤워수전, 주방 등)를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또한, 근린생활시설(2층), 경비실 등 건축물에는 옥상녹화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사업지역 주변 정온시설(용도, 층수, 이격거리 등) 등의 현황을 이격거리, 지형적 차폐 여부와 함께 명시 -사업지구와 주변 정온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바, 건설장비와 정온시설 사이의 실제(수평 및 수직) 이격거리를 고려한 층별 소음 영향 평가 및 저감대책을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계획지구 주변 정온시설 현황을 이격거리, 지형적 차폐 여부와 함께 제시하였음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예측시 정온시설 사이의 실제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였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도로의 통행량 등과 관련하여 동별, 층별 소음영향을 예측(계획 층수를 감안하여 대표 층수를 선정)하고 저감방안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야간을 포함한 소음평가를 실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안(건축선 이격거리 확보, 완충녹지 조성, 층고조정 등)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소음 저감효과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주변 통행량에 따른 층별 소음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하였음 -야간 도로변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영시 야간 차량소음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운영시 소음영향을 예측한 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

<표 1.5-1> 계 속

| 구분 | 의견제출자 (기관) | 평가항목 | 의견요지 |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비고 |
|-----------------|---------------|--------------|--|--|----|
| 평가서 초안 공람 | 낙동강유역 환경청 | 2.입지의 타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주거지역의 일조권 영향(시간대별, 계절별)에 대하여 분석·제시하고 건축물 배치 및 층고계획 조정 등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조권 영향을 예측한 결과, 일조권고치 기준을 만족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사업대상지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와 주거지 사이에 완충녹지대를 계획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 층고·배치·색채계획, 소공원 및 조경식재 등의 녹지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다소의 조망점을 선정(경관조망점은 원경과 중경, 근경에 대한 경관조망 대상지점을 제시)하고 조망점 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거쳐, 원경, 중경, 근경 각 4~5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현실감과 스케일을 고려하여 시설물 입지로 인한 경관적 영향(가시권 분석, 경관시물레이션 등)을 예측하고 개선방안 도출·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와 주거지 사이에 조경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차량 소음 등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였음 -계획지구내 건축물 층고·배치·색채계획과 녹지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수의 조망점을 선정하였으며, 가시권 분석 및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계획과 관련된 주민의견(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의견, 주민설명회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의견과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주민의견을 제시하였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계획의 필요성 및 규모 적정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검토·제시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계획의 필요성과 규모 적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 |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 대 기 소음·진동 | 대 기 소음·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 및 운영시 대기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공사시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 시 사업지구 주변 일부 정온시설(단독주택, 송보파인빌아파트, 여옥마을)에서 가설방음벽 설치 등 저감대책에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적정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작업시간제한 등의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주변 정온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음 | |

<표 1.5-1> 계 속

| 구분 | 의견제출자 (기관) | 평가항목 | 의견요지 |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비고 |
|-----------------------------|-----------------|--------------|---|---|----|
| 평가 서 초 안 공 람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 대 기 소음·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하며, 공사 중 자연발생 석면이 노출이 될 경우 석면노출 및 비산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폐유 등 지정폐기물 등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처리할 계획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인근 취락지역을 통과하는 공사차량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건설장비 등에 의한 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방음·방진벽(망)설치, 진입도로 살수, 공사차량 저속운행 등 환경피해 억제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공사차량 및 건설장비 등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저감하기 위해 비산방진망 및 가설방음팔널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차량 저속운행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조명기구·시설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조명목적에 맞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에 적합한 조명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조명기구 및 시설 설치시에는 조명목적에 맞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조명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도로에 의한 소음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인접도로에 의한 소음 영향을 예측한 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간소음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충간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일조나 조망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간소음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충간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본 계획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을 예측한 결과, 일조권고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울러 사업시행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기질,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토록 하겠음. | |

<표 1.5-1> 계 속

| 구분 | 의견제출자 (기관) | 평가항목 | 의견요지 |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비고 |
|-----------------------------|-----------------|------|--|---|----|
| 평가 서 초 안 공 람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 자연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자연도 2등급 구간은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사업구간에서 배제하거나 최대한 원형보전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주요 산림축(낙남정맥) 훼손 및 지형단절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내 생태·자연도 2등급 구역은 대부분 곰솔군락이나 원형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용지 조성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형 및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에 해당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인·허가 등을 한 경우 20일 이내에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개발면적이 26,100㎡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및 현지 조사 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삼, 새호리기,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팔색조)에 대하여 사업시행시 보호종에 대한 영향저감 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전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 서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면밀한 검토(조사지점 확대, 지역 환경전문가 의견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서식여부 확인)를 하여 서식지 등 훼손이 없도록 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역 주변에 보호수(회화나무 1본) 및 노거수(회화나무 1본, 느티나무 1본)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시 비산먼지 등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남측으로 약 450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역 중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보전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사업시행시 야생동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야생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

<표 1.5-1> 계 속

| 구분 | 의견제출자 (기관) | 평가항목 | 의견요지 |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비고 |
|---|-----------------|---|--|---|----|
| 평가 서 초 안 공 람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 자연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시행시 주변환경 변화 및 야생동물 서식지 영향여부 등을 고려한 공사계획 수립하고,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발견시 신속한 조치 및 서식지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시행시 주변환경 변화 및 야생동물 서식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공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사시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음 | |
| | | 폐기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전시 폐기물처리계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처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훼손대상 임목에 대해서는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야 하며, 임목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을 최소화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훼손되는 수목은 「공사착수전 훼손대상 산림발생 임목처리절차(환경부·국토부·산림청, 국무회의, 2014.02)」를 참조하여 최대한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녹색제품(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자재는 친환경적인 녹색제품 사용을 최대한 고려할 계획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 조치하여야 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과정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 하겠음 | | | |
| |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 수질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지역(지구)내 지하수 관정 폐공 또는 개발·이용시는 지하수의 수위저하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시 지하수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내 지하수관정 발견시 폐공조치할 계획이며, 용수는 기존 상수도를 통해 공급받을 계획임. 향후 대상지내 대상지내 지하수 개발·이용시에는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시 지하수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할 계획임 | |

<표 1.5-1> 계 속

| 구분 | 의견제출자 (기관) | 평가항목 | 의견요지 |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비고 |
|-----------------------------|---|---|---|---|----|
| 평가 서 초 안 공 람 |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 수질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추진 중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 토사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하며, 인근 공공수역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이행하기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공사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등 [운영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점오염저감시설(2개소) 설치, 투수성포장계획 | |
| | | 수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외 타법 등 저촉사항 없으면서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규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사천시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시기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관련부서에 허가(신고)를 득하도록 하겠음 | |
| | 수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퇴적물 등의 오염물질 및 유류 유출, 운영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공사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등 [운영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점오염저감시설(2개소) 설치, 투수성포장계획 | | |
| | 수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면적(2,437.8㎡)이 10,000㎡ 미만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나,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 이용 도모,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의 설치를 권고하며, 향후 빗물관리시설 설치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단지내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은 투수성으로 포장할 계획임 | | |
| 수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서 정한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같은법 제61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경상남도에 신고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공동주택 조성사업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계획은 없음. 향후 설치·운영할 경우 경상남도 관련부서에 신고하도록 하겠음 | | | |

<표 1.5-1> 계 속

| 구분 | 의견제출자 (기관) | 평가항목 | 의견요지 |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비고 | |
|-----------------------------|-----------------|------|--|--|----|--|
| 평가 서 초 안 공 람 |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 상수도 | • 총 계획용수량에 따라 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선행하여야 함. | • 계획지구의 상수공급계획에 대하여 사천시 상하수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 | | |
| | | | • 상수도 공급 가능여부는 사천시 상수도부서와 협의하여 의견 반영. | • 계획지구의 상수공급계획에 대하여 사천시 상하수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 | | |
| | | | • 수도공급 방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사천시 상수도 담당부서와 협의 바람. | • 계획지구의 상수공급계획에 대하여 사천시 상하수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 | | |
| | | | • 사업시행시 「수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 | |
| | | | • 공동주택 등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를 준수해야 함. | • 저수조 설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토록 하겠음 | | |
| | | 하수도 | • 사업시행시 세부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공하수처리구역내 지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가능여부 및 유입농도, 유입시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사천시 하수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공공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은 「하수도법」제34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사천시 하수도부서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사전협의 및 신고를 하여야 함. | • 사천시 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계획대상지는 사천시 공공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음 •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법적 방류수질기준보다 강화하여 처리 후 방류할 계획이며, 오수처리시설 설치 전까지 사천시 하수도사업소와 인입 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음 | | |
| |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2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수도 설치에 사천시 하수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 • 대상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중수도 설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1.5-1> 계 속

| 구분 | 의견제출자 (기관) | 평가항목 | 의견요지 |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비고 |
|-----------------------------|---|---|--|--|----|
| 평가 서 초 안 공 람 |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 하수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중수도 설치를 권장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중수도 설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
| | 사천시 (환경위생과) | 입지제한, 행위제한 등 개별법 저촉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안내 - 토공사 등의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공사 착공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는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으로서 공사착공 전에 사천시 관련부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할 득할 계획임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방진망 설치, 세륜 및 세차시설 설치, 살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관리법」 특정공사 사전신고 안내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일 경우,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장일 경우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주간 65dB 이하)을 준수하여야 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착공 전에 사천시 관련부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할 계획이며, 공사시 공사장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 |
| | |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비 고 | |
| | | 향타기·향발기 또는 향타향발기 | 압입식 향타향발기는 제외 | | |
| | | 공기압축기 | 공기투출량이 2.83m³/분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 | | |
| | | 브레이커 | 휴대용을 포함 | | |
| | | 천공기,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 - | | |
| |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민 입주 7일전까지 그 측정결과를 환경위생과로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입구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시공 완료 후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사천시 환경위생과로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입구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토록 하겠음 | |

<표 1.5-1> 계 속


| 구분 | 의견제출자 (기관) | 평가항목 | 의견요지 |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비고 |
|-----------------|----------------|--|---|---|----|
| 평가서 초안 공람 | 사천시 (환경위생과) | 수 처리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된 평가서에 의하면 발생 오수를 자체 처리시설을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약 300m³/일에 달하는 규모의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오수의 자체 처리가 불가피하더라도 사업 시행 중에 여건이 변경되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유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시 하수도사업소와 검토 및 협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천시 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계획대상지는 사천시 공공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음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법적 방류수수질기준보다 강화하여 처리 후 방류할 계획이며, 오수처리시설 설치 전까지 사천시 하수도사업소와 인입 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수를 자체 처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 하여야 하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오수의 배출라인을 계획하기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수처리시설 설치 전까지 사천시 하수도사업소와 인입 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과정의 절·성토로 우기시 토사유출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해 하류부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등을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
| 주민의견 | 주민의견 | 여옥마을 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옥마을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개최관련 안내문을 보내지 않아 금일 설명회는 무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 규정에 따라 중앙 및 지방일간지 게재, 사천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전락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게재하였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상, 미세먼지 영향을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상은 관련 전문조사업체((주)누리환경기술원)에 조사 의뢰하였음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 관한 규정" 등을 참조하여 설계 및 도시계획 자료, 모델링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하였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보아파트가 900세대로 차가 약 3대씩 2700대로 현재 포화상태인데,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차난이 우려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는 292세대가 계획되어 있고 법정 주차대수는 294대이나 총 302대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시행사에서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설명회와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 |

■ 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낙동강유역환경청</p> <p>환경부</p> </div> <p>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회신[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p> <p>1. 사천시 건축과-81262(2017.12.20.)호와 관련됩니다. 2. 귀 시에서 힘의 요청한 「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관련하여 불입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등 의견을 환경평가정보지원시스템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낙동강유역환경청</p> </div> <p>수신자 사천시(건축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hr/> <p>수무관 김이재 주무관 서수영 환경평가과 신교 2018. 2. 2. 피상 주기희</p> <p>합초지</p> <p>시책 환경평가과-827 (2018. 2. 2.) 접수 건축과-8107 (2018. 2. 2.)</p> <p>우 51430 경남 창원시 마산구 중앙대로250번길 5 / http://me.go.kr/indp</p> <p>전화번호 055-211-1647 팩스번호 055-211-1606 / kmj0224@me.go.kr / 비공개(5)</p> | <p>[붙임]</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p>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 풍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p> <p>I.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 ○ 사업내역 : 26,1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구역명</th> <th rowspan="2">위치</th> <th colspan="2">면적(㎡)</th> <th rowspan="2">최초 결정일</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정</th> <th>변경후</th> </tr> </thead> <tbody> <tr> <td>신선</td> <td>사천 풍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td> <td>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td> <td>-</td> <td>중)26,100</td> <td>26,100</td> <td>-</td> </tr> </tbody> </table> <p>- 토지이용계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면적(㎡)</th> <th>구성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18,289</td> <td>100.0</td> <td></td> </tr> <tr> <td>공동주택</td> <td>82,319</td> <td>69.6</td> <td></td> </tr> <tr> <td></td> <td>소계</td> <td>33,655</td> <td>28.4</td> </tr> <tr> <td rowspan="3">기반시설</td> <td>도로</td> <td>13,219</td> <td>11.2</td> </tr> <tr> <td>소공원</td> <td>16,161</td> <td>13.6</td> </tr> <tr> <td>한송녹지</td> <td>1,828</td> <td>1.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자 : 주식회사 선명종합건설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제2호가목3)도시·군관리계획 <p>II. 검토의견</p> <p>I. 총 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으로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바, 아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후 | 신선 | 사천 풍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 | - | 중)26,100 | 26,100 | -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계 | 118,289 | 100.0 | | 공동주택 | 82,319 | 69.6 | | | 소계 | 33,655 | 28.4 | 기반시설 | 도로 | 13,219 | 11.2 | 소공원 | 16,161 | 13.6 | 한송녹지 | 1,828 | 1.5 |
|--|--|----------------------|------|----------|--------|-------|--------|----|--------|-----|----|------------------|----------------------|---|----------|--------|---|----|-------|--------|----|---|---------|-------|--|------|--------|------|--|--|----|--------|------|------|----|--------|------|-----|--------|------|------|-------|-----|
| 구분 | 구역명 | | |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정 |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선 | 사천 풍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 | - | 중)26,100 | 26,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18,289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주택 | 82,319 | 6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33,655 | 2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반시설 | 도로 | 13,219 | 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공원 | 16,161 | 1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송녹지 | 1,828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주변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계획의 필요성 및 규모 적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검토 필요</p> <p>- 사업지역 주변에 마을 및 아파트 단지가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필요</p> <p>- 주변 환경 영향(보전상태가 양호한 식생대·지형 및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범위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아래 검토의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제시한 우리청 의견을 충실히 검토·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여야 함. ○ 금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 수렴 후 변경사항(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도면, 표 등)하여 제시하여야 함. <p>2. 입지의 타당성</p> <p>가. 자연환경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조사 장전면산단단지 외 2개 자료와 동 사업계획지역의 연관성(이격거리, 동·식물상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미제시되어 있으므로 도면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사토에 대한 처리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토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처리 시 외부에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발생여부를 예측·평가하여야 함. - 사토관리를 위해 계획지구 내 임시처리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제시한 바, 구체적인 임시처리장 위치 및 규모, 가배수로 계획 등 제시 - 토사의 처리로 인한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할 경우 해당 처리방안이나 처분 부지의 환경이 입지적으로 적정하진 검토 - 토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근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공급 가능성이 확인되었을 때 활용가능한 것이며, 가상적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 운영시 상수도 공급계획 및 오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계획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초기우수 등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인근 하천 등으로 직접 | <p>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대책(투수성포장,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유출량 저감 등 도시공간의 자연순환기능 향상을 위하여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자진기도로, 주차장 등은 최대한 투수성 재료로 포장하고 그 밖의 인공화지역에 대하여도 견배율 조정, 옥상녹화, 벽면녹화, 녹지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생태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동주택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견배율 조정, 투수성 포장, 녹지조성 등을 통하여 생태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유도 *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2016. 7. 환경부)」을 참고하여 사업시행 후 생태면적률은 최소 4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권고함 ○ 사업부지가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곡부의 풍요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주동사이에 낙엽활엽교목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옥상동원상 영향 저감방안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수경, 즉구 등에 양서·파충류 등 소형 동물의 추락 방지 및 탈출 시설 계획 - 소형 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한쪽 방향에서 단계별로 공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공사방향, 단계구분, 도면표기 등)을 제시 ○ 사업지구가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지형과의 단차는 경사도 1:1 이내의 범위로 처리되도록 조성하여야 함. <p>나. 생활환경의 안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운영 시 자체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탄소흡수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을 밀식 - 운영시 태양광에너지 활용, 에너지 고효율 설비(센서등, LED조명 등) 설치, 전수(전차 감용식 수도설비, 빗물저금 등)·결선설비 설치, 건축물 옥상 녹화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 공사시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 주변 정은시험(용도, 층수, 이격거리 등) 등의 현황을 이격거리, 지형적 차폐 여부와 함께 명시 - 사업지구와 주변 정은시험이 인접하고 있어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바,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장비와 정온시설 사이의 신제(수평 및 수직) 이격거리를 고려한 층별 소음 영향 평가 및 저감대책을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도로의 동행량 등과 관련하여 동년, 층별 소음영향을 예측 (계획 층수를 감안하여 대표 층수를 선정)하고 저감방안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 야간을 포함한 소음 평가를 실시 -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안(건축선 이격거리 확보, 완충녹지 조성, 층고조정 등)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소음저감효과 검토 ○ 인근 주거지역의 일조권 영향(시간대별, 계절별)에 대하여 분석·제시하고 건축문 배치 및 층고계획 조정 등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p>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진입도로 및 내부 도로와 주거지 사이에 완충녹지대를 계획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 층고·배치·색채계획, 소공민 및 조경 식재 등의 녹지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다수의 조망점은 선정(경관조망점은 원경과 중경, 근경에 대한 경관조망 대상 지점은 제시)하고, 조망권 선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원경, 중경, 근경 각 4-5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현실감과 스케일을 고려하여 시선문 입지로 인한 경관적 영향(가시권 분석,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예측하고 개선방안 도출·제시 ○ 동 계획과 관련된 주민의견(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의견, 주민 설명회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 주변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계획의 필요성 및 규모 적정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검토·제시하여야 함. 끝. | |
|---|--|

II 경상남도(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검토의견



국민주의 나라 참여로본 대한민국

경 상 남 도

수신 사천시청(건축과장)
(경유)
제목 사천 동정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락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회신

사천시 건축과-81262(17.12.20.)호와 관련 사천 동정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락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사업개요

- 계획명 : 사천 동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
- 위 치 :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536번지 일원

검토의견 : 불일 참조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2018. 1. 12

주무관 부임섭 환경관리담당 조영철 최종성토과장 김서현


전화번호 055-211-6625 팩스번호 055-211-6619 / tancee@prova.kr / 배급(5)

단 1편의 예심이라도 반드시 일차로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분 야 | 검토 및 협의 의견 | 비 고 |
|-----------|--|-----|
| 대 기 소음·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및 운영시 대기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공사시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절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 사업지구 주변 일부 정온시설(단독주택, 송배관인빌 아파트, 여육마을)에서 가선방음벽 설치 등 저감대책에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적정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에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수대체 등 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식면해체·제거입자로 하여금 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하며, 공사 중 자연 발생 식면이 노출된 경우 식면 노출 및 비산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한 것. ○ 공사시 인근 취약지역을 통과하는 공사차량 및 특정공사 사천신고대상 건설장비 등에 의한 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방음·방진벽(방)설치, 진입도록 산수, 공사차량 저속운행 등 환경피해 억제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인공조명기구·시설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조명목적에 맞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에 적합한 조명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 인접도로에 의한 소음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인주민의 생활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하여야 함. ○ 음간소음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음간소음으로 인한 인주민의 생활불편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기준 건축물의 일조나 조망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하여야 함. ○ 아울러 사업시행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
| 자연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저원도 2등급 구간은 생태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사업구간에서 배제하거나 최대한 원형보전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주요 산림축(낙남정맥) 훼손 및 지형단절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

| 분야 | 검토 및 협의 의견 | 비고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에 해당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인허가 통용 한 경우 20일 이내에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권역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문헌 및 현지 조사 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삼, 새호리기,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판색조)에 대하여 사업시행시 보호종에 대한 영향저감 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전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 서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민민한 검토(조사지점 확대, 지역 환경전문가 의견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서식여부 확인)를 하여 서식지 등 훼손이 없도록 함. 계획지역 주변에 보호수(회화나무 1본) 및 노거수(회화나무 1본, 느티나무 1본)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시 비산먼지 등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계획지역 중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보전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이격 거리를 준수하고 사업시행시 야생동물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한 것. 사업 시행시 주변환경 변화 및 야생동물 서식지 영향여부 등을 고려한 공사계획 수립하고,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발견시 신속한 조치 및 서식지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
| 폐기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천시 폐기물관리계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처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함. 또한, 훼손대상 임목에 대해서는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야 하며, 임목 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을 최소화하여야 함.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 구제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자재는 지반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녹색제품(환경표지, 우수제품인증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함. 기타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정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 조치하여야 함. |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경 상 남 도



수신 사천시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사천 중정지구 주택건설사업) 수정본야 환경성 검토의견 회신
사천시 건축과-81262호(2017.12.20)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사천 중정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수정본야 환경성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 검토의견 1부. 끝.



경 상 남 도

주무관 : 표민규 수계관리담당 : 서범미 수질관리과장 : 신남 (2018. 1. 17.)
 협조자 : 김한준

시청 수질관리과-1155 (2018. 1. 17.) 접수 건축과-3318 (2018. 1. 17.)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탈어신로 2026, 경상남도 서무청사 수질관 / http://gvaengnam.go.kr
 리과 (1호관동)
 전화번호 055-211-6733 팩스번호 055-211-6719 / zangmi@korea.kr / 비공개(5)

단 1회의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차리 반드는 것으로 이의치도록 하십시오.

수질환경분야 검토의견서

[사천시 건축과-81262(2017.12.20)]

1. 건명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사천 중정지구 주택건설사업)


| 사업명 | 위치 | 기간 | 규모 (사업면적) | 토지이용계획 | 승인/협의의 기 관 | 비고 |
|-----------------------|------------------|------------|---------------|---|---------------|----|
| 사천 중정지구 공 동 수 대 건설 사업 | 사천시 중정리 535번지 원면 | 2017-2021년 | 사업면적: 26,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및 기안시설: 26,100㎡ - 공동주택: 12,720㎡ - 건축면적: 2,437.8㎡ - 잔여면적: 13,372.2㎡ (상대면적: 26,100㎡) 규모: 준중규모 주택 2개 기타: 2층-자랑 2층 | 사천시/낙동강유역환경청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수: 292세대 - 주차: 302대 - 기안시설: 13,380㎡ - 도 로: 6,982㎡ - 소 공 원: 3,466㎡ - 완충녹지: 2,932㎡ | *시설시행자: 유안정개발 | |

2. 검토 및 협의의견

| 분야 | 검토 및 협의 의견 | 비고 |
|------|--|----|
| 수질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지역(지구)내 지하수 관정 패공 또는 개발·이용시는 지하수의 수위저하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천시 지하수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
| 수질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추진 중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 토사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하며, 인근 공공수역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그 외 타법 등 저축사상 없으면서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규정한 폐수 비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사천시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
| 수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비점원 등의 오염물질 및 유류 유출, 운영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면적(2,437.8㎡)이 10,000㎡미만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나,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 이용 도모,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의 설치를 권고하며, 향후 빗물관리시설 설치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

| 분야 | 검토 및 협의 의견 | 비고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관리시설의 종류 [1.연수처리시설(저수조, 침전조, 여과조, 정수조, 여과조, 정수조, 여과조, 정수조 등), 2.빗물저류시설: 침투조, 침투조, 우수선 포집, 우수선 보호시설 등, 3.빗물저류시설: 연못, 연못, 단차, 연못, 연못, 연못, 연못, 연못, 연못, 연못 등, 4.빗물저류시설: 연못, 연못, 연못, 연못, 연못, 연못, 연못, 연못 등] ※ 빗물관리시설의 종류 [1.연수처리시설(저수조, 침전조, 여과조, 정수조, 여과조, 정수조, 여과조, 정수조 등), 2.빗물저류시설: 침투조, 침투조, 우수선 포집, 우수선 보호시설 등, 3.빗물저류시설: 연못, 연못, 단차, 연못, 연못, 연못, 연못, 연못 등, 4.빗물저류시설: 연못, 연못, 연못, 연못, 연못, 연못, 연못, 연못 등] | |
| 상수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법」 제2조에서 정한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같은법 제61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경상남도에 신고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총 계획용수량에 따라 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선행하여야 함. 상수도 공급 가능여부는 사천시 상수도부서와 협의하여 의견 반영. 수도공급 방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사천시 상수도 담당부서와 협의 바람. 사업시행시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공동주택 등 저수조류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를 준수해야 함. | |
| 하수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시 세부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처리구역내 지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가능 여부 및 유입농도, 유입시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사천시 하수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공공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은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사천시 하수도부서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사전협의 및 신고를 하여야 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2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수도 시설은 사천시 하수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빗물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중수도 설치를 권장함. | |

■ 사천시(환경위생과) 검토의견



사 천 시
Sacheon

신철환이소, 사천시의 업무입니다.

수신 건축과장
(검류)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관련법 의견 제출(사천 풍정지구 주택건설사업)
건축과-81262(2017.12.20.)호와 관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36번지 일원에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관련법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환경 위 생 과 장 *김영진*

| 주무관 | 주심반 | 환경관리팀장 | 심법법 | 환경위생과장 | 일일 2018. 1. 20. |
|----------------------|--------------|-----------------------------|-------------------|----------------------------|-----------------|
| 협조차 주무관 | 신형수 | 주무관 | 장미 | 수감보전팀장 장수영 | 제정 |
| 시행 | 환경위생과-3307 | (2018. 1. 23.) | 협수 건축과-5192 | (2018. 1. 23.) | |
| 우 | 52539 | 국산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장로 77, (사천시청) | | / http://www.sacheon.go.kr | |
| 전화번호 | 055-831-2764 | 팩스번호 055-831-6025 | / bhouse@korea.kr | / 대국민 공개 | |
| 석지서요 불법징고, 모호패도 개인정보 | | | | | |

사천 풍정지구 주택건설사업 검토의견서

- 입지제한, 행위제한 등 개별법 저촉여부
가.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안내
- 토공사 등의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공사 착공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소음·진동관리법」 특정공사 사전신고 안내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일 경우,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장일 경우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주간 65dB 이하)을 준수하여야 함.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비 고 |
|---|--------------------------------|
| hammer, 망망기 또는 망타망망기 | 합업식 망타망망기는 제외 |
| 공기압축기 | 공기보충량이 2.53㎥/분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 |
| 브레이크 | 휴대용을 포함 |
| 천공기, 굴삭기, 발전기, 로더, 양재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펌프차, 콘크리트 펌프 |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측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민 입주 7일전까지 그 측정결과를 환경위생과로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계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함.
- 수 처리 계획
가. 제출된 평가서에 의하면 발생 오수를 자체 처리시설을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약 300m³/일에 달하는 규모의 오수는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오수의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도 사업 시행 중에 여건이 변경되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유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시 하수도사업소와 검토 및 협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람.
나. 오수를 자체 처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 하여야 하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오수의 배출라인을 계획하기 바람.
다. 공사 과정의 질·성토로 유기물의 토사유출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